

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번 호	210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. 12
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 : 분뇨관련영업허가시 민원서류 간소화 및 신속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사항으로 사업67432 - 784('93.6.10)사업 67432 + 1142 ('93.9.1)호로 구조례 개정토록 청소업무 개선사항으로 시달되어 개정 코자 함.
2. 주요골자 :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증
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"시장협의"를 거치도록된 "시장의협의" 규정을 삭제
3. 관련법규
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8조3항 및 동조례제17조1항
4. 조례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8조제3항 중 "시장의 협의를 거쳐"를 삭제한다.
- 제17조제1항 중 "시장의 협의를 거쳐"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8조	제8조
③ 구청장은 분뇨의자가수집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제2호 서식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	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별지제2호 서식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제17조	제17조
① 구청장은 법35조1항 및 규칙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.	① 구청장은 법35조1항 및 규칙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.